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도참고자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문의: 해외투자과 송요한 과장(2110-5109), 박달 사무관(2110-5380)

기업 U턴 분수령이 될 U턴기업지원법 국회 통과

- 제정안이 6.27(목)일 국회 통과되어 7월 공포, 11월 시행 예정 -

□ 국회는 6.27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U턴기업지원법 제정안을 의결**함

□ 이번에 통과된 U턴 기업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 해외사업장의 청산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장의 축소 등의 경우도 U턴기업에 포함**(제2조)하고

○ **산업부가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U턴기업 선정제도**를 통해 U턴 미완료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기업 중심 지원제도 구축(제7조)하며,

○ **조세·보조금·입지·인력 등 다방면에 걸쳐 U턴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동반복귀기업과 주변 대학-연구소 등과 연계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제16조)

□ 전북익산 주얼리 기업, 부산 신발 기업 등 다수의 해외진출기업이 지자체와 U턴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최근 기업들의 U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 U턴기업지원법 제정은 **우리나라가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이를 계기로 **해외진출기업의 U턴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 향후 U턴기업지원법이 **7월초 공**포될 계획이며, 신속한 기업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긴 11월중 시행** 예정

□ 국회는 6.27(목)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관한 법률」(이하 U턴기업지원법) 제정안을 의결**함

○ 이번에 제정된 U턴기업지원법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12.11.2일 제출한 법안과 민주당 전정희 의원이 '13.3.21일 대표 발의한 법안을 국회 심의를 거쳐 통합한 것임

□ 최근 FTA체결 확대에 따른 **관세감면, Made in Korea의 브랜드 가치 상승 등 국내 생산의 이점**이 커지고 있는데 반면 **중국 인건비 상승 등 해외경영환경은 악화**되고 있어 해외진출기업의 **U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U턴기업지원법은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U턴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이번 통과된 U턴기업지원법은 U턴기업지원과 U턴활성화를 위한 핵심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음.

○ U턴기업의 범위를 해외 사업장을 완전 청산·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분 축소 및 유지하는 경우까지 폭넓게 규정**(제2조)하여 해외진출기업의 활발한 국내투자를 유도하고

○ 각종 U턴 지원제도가 국세청, 관세청 등 관련 기관에 산재하고 있음을 감안, **선정 제도를 통해 산업부가 통합적으로 U턴기업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지원제도의 효율성을 확보**(제7조)함과 동시에

- **U턴을 완료하지 않은 기업도 U턴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부가 우선 U턴기업으로 선정하고 U턴 이행 여부를 사후 관리하는 **先선정·後관리 체계**를 도입(제7조 제3항, 제8조)함

○ 또한 U턴기업이 **조세, 자금, 입지, 인력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제11조~제15조)

○ 이와 함께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통해 해외 사업장 청산에서 국내사업장 신·증설에 이르는 **U턴 전과정에 걸쳐 체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제17조)함

□ 특히 이번 U턴기업지원법은 보다 **강화된 동반복귀기업 지원** 내용을 포함함

○ 동반복귀기업을 위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의 용도변경** 등 **산업단지 입주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신속하게 국내정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제16조 제2항, 제3항)

○ **주변 대학-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도록 지원함으로써 **U턴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반복귀기업 지원이 강화 됨(동조 제4항)

□ **전북 익산 주얼리, 부산 신발 기업 등 해외진출기업 35개사**가 지자체와 U턴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추가로 10개사**가 U턴을 추진하는 등 기업들의 **U턴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기업들이 U턴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이번 U턴기업지원법 국회통과를 계기로 **U턴기업 지원의 법적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U턴이 더욱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

○ 특히 **유턴기업지원법 제정은 우리나라가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미국·대만 등 U턴기업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도 U턴기업지원을 위한 독립적 법체계를 마련한 사례가 없어, **해외진출기업에 정부의 U턴지원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시그널링 효과**가 큼

□ 금번 국회 통과된 U턴기업지원법은 **7월초 공포**될 계획이며, 신속한 U턴기업 지원을 위해 시행일을 당초 '**공포일로부터 6개월'에서 '공포일로부터 4개월'로 앞당겨 11월중 시행**될 예정

□ **김창규 산업부 투자정책국장**은 "이번 제정된 U턴기업지원법은 **세계 최초로 U턴기업지원을 위한 통합적 법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강조하고 "11월에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등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아울러 법 통과를 계기로 U턴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U턴기업 맞춤형 입지 제공 등 **지속적으로 U턴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담당관 김영만 서기관(☎ 02-2110-47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요

- 총 본문 21개 조문,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 -

1 U턴기업의 개념 정립(안 제2조)

○ U턴기업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여 지원범위(안 제2조)를 해외 사업장의 완전 청산·양도뿐만 아니라 부분 축소 등의 경우까지 인정

〈U턴기업의 범위 및 지원내용〉

구 분			U턴기업여부
공통사항	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 신·증설	완전매각/청산	無/有	○
	축소	無/有	○
	유지	無	○
	유지	有	×

2 국내복귀기업 선정·취소제도(안 제7조, 제8조)

○ 국내복기기업에 대한 선정제도 운영을 통해 산업부가 통합관리하는 先지원·後관리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제도의 효과성 제고

〈선정제도 운영 절차〉

• U턴하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부에 선정 요청 → 산업부 확인서 발급 → 기업은 확인서를 근거로 관계기관에 지원을 요청 → 산업부 이행여부 사후 점검(U턴 절차를 미이행하는 경우 선정 취소하고 국세청 등 지원 기관에 통보)

3 각종 지원제도의 법적근거 마련(안 제11조~제16조)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조세·자금·입지 및 동반복귀 기업 등에 대한 지원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

〈제정안 지원제도 주요내용〉

• **(조세감면)** 법인세 및 관세감면 등의 근거 마련(안 제11조)
• **(보조금 지원)** U턴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안 제12조)
• **(입지 지원)** U턴기업을 위한 산업단지 지정 등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13조)
• **(동반복귀 지원)** 동반복귀 U턴기업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 용도변경, 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안 제16조)

4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설치(안 제17조) 등 U턴기업 지원체계 구축

○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안 제17조)의 설치를 통해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업무를 수행

○ 선정제도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허위서류 제출, 조사 방해 등의 경우에 벌칙·과태료를 부과(안 제18조~제21조)

첨부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요

① **(법인·소득세)** 법인 및 소득세 감면(하반기 시행)

구분	해외 사업장 청산 / 양도시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신설시
감면내용	5년간 100%, 2년간 50%	3년간 100%, 2년간 50%
유예기간	해외 사업장 청산 및 양도까지 4년의 유예기간 부여	

② **(관세)** 신규·중고 자본재 도입시 관세 감면(하반기 시행)

구분	해외 사업장 청산 / 양도시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신설시
감면내용	관세 100% 감면	관세 50% 감면
감면기간	U턴 기업으로 선정된 후 5년 간	

③ **(보조금) 입지** 및 **설비투자**에 대해 보조금 지원(시행중)

입 지	분양가·지가·임대료의 35% 보조(일반지역 기준, 지원우대 지역의 경우 최대45%)
설 비	투자금액의 10% 지원고용(일반지역 기준, 지원우대 지역의 경우 최대 20%), 인원에 따라 최대 5%p 추가지원

※ 보조금 지원금액은 기업별 최대 60억원 한도(입지는 5억원 한도)

④ **(입지)**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아파트형 임대공장 등 입지 제공, 국가·일반 산업단지, 장기임대산단 등 입주 우선권 부여(하반기 시행)

⑤ **(외국인력)** 현지 생산관리 인력의 국내 재고용시 그 인력에 대한 "특정활동사증(E-7)"의 제한적 허용(하반기 시행)

* U턴 기업의 국내 고용규모를 고려, 내국인 고용인원의 5~10% 이내에서 현지 생산관리 인력에 대해 비자 발급(최대 30인 한도)

⑥ **(고용보조금)** 국내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해 1년의 기간 내에 1인당 720만원의 고용보조금 지원(최대 20인 한도)(하반기 시행)

⑦ **(금융지원)**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특별보증* 제공(하반기 시행)

* 국내 사업장 설비자금 및 이전 소요자금에 대한 보증 제공

⑧ **(수출금융)** U턴 기업의 자금수요 등을 고려하여 수출신용 보증 한도 우대(2배이내) 및 보증료 최대 20% 할인(하반기 시행)

⑨ **(통관지원)** 원재료 수입시 검사비율 축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절차 간소화, 무료 FTA 컨설팅 제공 등 FTA 활용 지원(하반기 시행)

⑩ **(집단 U턴)** 공동 R&D센터 건립 지원 등을 통해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첨부3 U턴 MOU 체결 기업 현황

□ 35개 기업, 8개 광역지자체, 1,974억 투자, 8,396명 고용 계획

업체	지자체	투자금액 (억)	고용계획 (명)	국내투자계획	MOU 체결시기
주얼리 기업 20개사	전북	1,030	6,576	'13.7월 착공예정	'12년 8월
신발 기업 4개사	부산	297	685	'14년 하반기 증설 예정	'13.4.9
자동차부품 기업	대구	44	30	증설 추진중	
전자부품 기업	경기	28	200	'13.4월부터 운영중(신설)	
인쇄 기업	경기	55	30	'12.12월부터 운영 중(신설)	
기계 업종 기업	경기	20	35	'13.6월부터 운영 중(신설)	
금속 업종 기업	충남	35	50	부지계약체결	
전자부품 기업	경북	97	40	'12.10월부터 운영중(증설)	
자동차부품 기업 2개사	광주	210	68	13.7월 착공 (신설)	'13.4.19
금속기계가공 기업	부산	32	35	'13.5월 착공 (신설)	'13.5.10
의류 기업	강원	100	600	추진 중	'13.3.19
기계 업종 기업	전북	26	47	'13.7월 신설 예정	'13.6.5

첨부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진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일 것
 나. 기업 자신 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기업이 소유한 해외사업장을 통해 2년 이상 계속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하고 있을 것
2. "사업장"이란 제1호나목의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이나 시험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3. "국내복귀"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4. "국내복귀기업" 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
 가. 국내복귀를 통해 신설·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나.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해외진출기업의 경영환경 여건 및 전망
3. 업종별 국내복귀 수요에 관한 사항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 방안
5. 국내복귀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2.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6조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 지원을 위해 제2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을 받은 기업이 아닐 것
2. 해외사업장을 축소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이루어졌을 것
3. 그밖에 국내복귀기업 지원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외 및 국내 사업장 현황
2.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및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복귀가 진행중인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조건으로 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제2항에 따른 국내복귀계획서에 조건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을 완료할 것
2.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가 완료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를 완료할 것
3.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완료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한과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축소할 것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의 정책목적 달성과 국내복

귀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은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 계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신청한 경우
2.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폐업하거나 국내복귀를 통해 신설·증설한 사업장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4. 제7조제2항제2호의 국내복귀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7조제5항에 따른 변경통지의 결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선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원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통계자료를 수집·작성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해외사업장 및 국내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작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서류의 접수, 접수된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등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업무의 일부와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관세법」이나 그 밖의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고용창출 규모, 첨단업종 여부 및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매입비용 및 설비투자금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입지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14조(인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국내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해외사업장의 청산 등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를 위하여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등 국내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동반하여 국내복귀를 하는 경우 국내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동종·유사 또는 연관 업종의 기업일 것
2. 국내에 신설되거나 증설되는 사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을 것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원활한 산업단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입주대상 업종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동반복귀기업의 원활한 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동반복귀기업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동반복귀기업을 통한 산업집적지 구축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동반복귀기업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내복귀기업과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조사·연구와 그 밖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둔다.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국내복귀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을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 파견 근무하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제11조에 따른 조세감면이나 제12조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은 자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습득한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국내복귀를 위하여 2012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한 기업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2조(소급적용에 따른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1조에 따라 국내복귀를 위하여 2012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한 기업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내복귀계획서 중 국내사업장 신설·증설에 관한 부분은 증명서류로 대체한다.